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03호> 2024년 2월 13일

정책/제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주요내용

■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촉발된 저작권 쟁점들을 검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기술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2023년 2월 발족하여 운영. 본 안내서는 해당 워킹그룹에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작성됨
- (안내서의 구성) ① 생성형 AI 기술의 사례 및 저작권법적 쟁점, ②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③ 저작자에게 대한 안내사항, ④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⑤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 및 국내외 사례, 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⑦ 사례별 Q&A, ⑧ 부록

[그림] 2024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



■ 주요 내용

1. 생성형 AI (Generative AI) 기술과 저작권

가. 생성형 AI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 (생성형 AI 기술의 의의) 생성형 AI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학습모델로 활용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며, 기존의 콘텐츠 제작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례) 자연어 생성,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음원 생성, 비디오 생성, 그 밖에 코딩 생성 서비스, 사용자 입력 등의 경우에도 활용

나.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 (AI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쟁점) AI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학습시키게 되는데,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여부가 주요 쟁점이 됨
-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쟁점) 산출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일부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침해자는 누구인지 등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

2.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가. 학습단계

-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음. 다만,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
-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제한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
- *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음

- (바람직한 저작물 이용방법) AI 사업자는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 자유이용 저작물(Public Domain)이나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

나. 산출물 생성 단계

-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와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가 판단되므로, AI 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유사한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

다.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 워킹그룹('23)에서 AI산출물의 표시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표시의무의 주체 및 내용, 적용대상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후속적으로 진행될 워킹그룹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필요 시 법률 개정 예정

3.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가. 학습단계

- (학습반대의사 표시)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

- 이미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그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안에 따라 묵시적 이용허락 등이 쟁점화될 수 있음

* 예를들어,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적용 등

- (학습에 이미 이용된 경우*) 해당 저작물이 추가적으로 AI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신의 저작물이 AI학습에 이용되었는지를 확인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¹⁾

1) <https://haveibeentrained.com/>

- 유럽연합 DSM저작권 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제4조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와 제한을 규정. 권리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방송사, 언론사를 포함한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뉴스기사 등 보유 콘텐츠를 AI 학습용으로 이용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거나 크롤러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배제표준 등을 사용²⁾

나. 산출물 생성 단계

- (기술적 침해방지책 마련) 일반적으로 저작권자는 AI 학습에 무단이용되는 과정에 있어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음. 최근에는 AI 학습에 저작물이 이용되더라도 유사한 산출물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등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

* C대학 연구팀의 '글레이즈(Glaze)', M대학 연구팀의 '포토가드(Photo Guard)' 등

4.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가. 저작권 침해에 유의

- (저작권 침해 가능성)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의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AI 산출물을 공연, 전시, 배포, 공중송신 등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특정한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작품 등과 동일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 (AI 이용여부 표기의 문제) 최근에는 생성형 AI 활용여부 표기 등 윤리적 쟁점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 연구·교육·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

2)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4.1.

- 학술지 및 공모전에 논문이나 작품 제출 시 AI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하고 준수 필요
- AI 서비스 이용약관 등 이용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출처, 창작 도구 등 표시 필요

5.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가.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및 등록)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불인정하나,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추가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등록가능
 -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더라도 이를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
- (AI 산출물의 저작자 인정 여부) 현행법상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므로(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I 자체에 대해서 저작자로서의 지위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AI를 단독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하여 등록할 수 없음
 - 다만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성을 부가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 내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것

나.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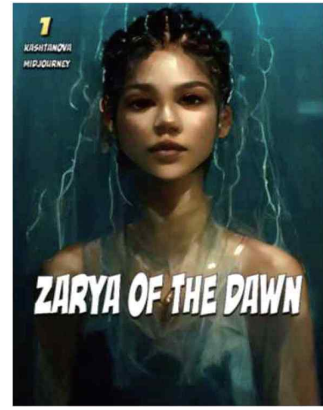
- (국내) 유명작가의 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삼고, 이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영상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시도한 사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고 하면서, AI가 영상화한 영상물의 등록을 반려(‘22년 10월 4일 접수, ‘22년 11월 3일 반려 통지)
- (미국) Stephen Thaler는 저작자를 AI 프로그램인 ‘Creativity Machine’로 기재하고 자신을 기계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라는 그림을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등록 거절

- Kristina Kashtanova가 이미지 생성형 AI ‘Midjourney’ 를 이용하여 만든 18쪽 분량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 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시도에 있어서도 미국 저작권청은 앞의 사례와 동일한 판단을 함

[그림] 미국 저작권청에서 등록거절 된 생성형 AI의 산출물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새벽의 자리야>

다. 등록 시 유의사항

- (AI 산출물의 등록)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작업을 할 경우, 추가로 작업한 부분만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등록이 가능
 - ‘추가작업’ 이 사소한 개변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등록 불가
 - AI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이를 원저작물로 한 2차적 저작물로의 등록도 불가
- (AI 산출물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의 소재가 AI가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이 인간이고, 그 선택과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
 - * 단,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AI 산출물 자체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AI 산출물에는 등록의 효력(추정력 등)도 미부여
 -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신청인이 선택·배열에 어떠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 등록 신청명세서의 ‘저작물 내용’ 에 상세히 기재 필요
-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고의로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한 것처럼 신청한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 등록 이후라도 AI 산출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말소 가능(저작권법 제55조의 4 제1항)
-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시 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삽입하여 안내 중

[그림]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의 주의문구

기존 등록정보 미리보기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개요의 작성 페이지)입니다. 작성된 내용은 등록부에 등재되며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인공지능(AI) 산출물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제호 (제목)	예) Candy(사탕) <small>*외국어 제목은 한글을 함께 기재.</small>
종류	-선택- -선택- -선택-
내용	저작물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재 <small>*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1000자 이하) Byte=0/ 3000 (한글 1글자 3Byte) *여러 건 신청 시 각 저작물마다 내용은 상이하게 기재</small>

■ 시사점

- 본 안내서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간이 추가작업한 부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힘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적법한 권한을 미리 확보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다만, 이러한 권고사항은 AI 사업자의 입장에서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어 SW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³⁾,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정책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권혜미, '[이슈플러스]급팽창하는 생성형 AI 콘텐츠...저작권 문제, 수면 위로', Daum 전자신문, 2024.2.5., <<https://v.daum.net/v/20240205072205981>>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4.1.
- 권혜미, ‘[이슈플러스]급팽창하는 생성형 AI 콘텐츠…저작권 문제, 수면 위로’, Daum 전자신문, 2024.2.5.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04호> 발간일은 2월 26일입니다.